

## 6 박물관 안내

### 1. 박물관 현황

#### 가. 연혁

- 1994. 09. 28 : 개교 15주년을 기념하여 박물관 헌판식
- 1995. 03. 27 : 박물관 개관식
- 1999. 12. 20 : 정헌실 개관(정헌선생 서화 작품 기증 81점)
- 2011. 09. 30 : 자연사 박물관 개관

#### 나. 유물현황

금속류	옥석류	토도류	골각류	목죽류 조철류	피모류 지직류	서화류 탁본류	편직류 제품류	기타	계
45	15	82	4	179	14	175	21	61	596

#### 다. 자연사 관련 표본 현황

패류	화석류	화폐류	계
4,615	169	6,000	10,784

### 2. 자연사 박물관 규정

#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 및 위치)** 본 자연사박물관은 호서대학교 자연사박물관(이하 “본관”이라 한다) 이라 칭하고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 (개정 2011.9.1)

**제2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본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업무)** 본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1.9.1)

1. 자연사관련 자료의 수집, 관리, 보존 및 전시
2. 전문서적과 각종 사진의 비치
3. 본 대학교 사료의 수집, 정리
4. 기타 본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 (관장)** ① 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1.9.1)

② 관장은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본관은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 및 작업실을 둔다. (개정 2011.9.1)

**제5조 (운영위원회)** ① 본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위원장 : 박물관장

2. 위 원 : 사무처장, 기획처장 및 해당분야를 전공했거나 조예가 깊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1.9.1, 2015. 5. 1)

3. 간 사 : 담당 팀장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하며, 본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과 자료수집에 대한 회의를 한다.

## 제 3 장 재 정

**제6조 (재정)** ① 본관의 재정은 교비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본관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본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 4 장 소 장 품

**제7조 (소장품의 종류)**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(개정 2011.9.1)

1. 본관이 수집한 자연사에 관련된 광물, 암석, 식물, 동물, 화석 및 민속자연사자료

2. 구입품

3. 수증품

4. 위탁품

**제8조 (수집방법)**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.

1. 본관의 조사와 발굴로 수집된 자료는 본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

2. 구입품은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감정을 거쳐 구입한다.

3. 수증품과 위탁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 제 5 장 관 략

**제9조 (관람시간과 휴일)** ① 본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9:30 ~ 17:00로 한다. 다만,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(개정 2011.9.1)

② 본관의 휴일은 본교의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일과 같다.

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관계없이 관장은 개관 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.

**제10조 (관람자격)** 본관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
1.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
2.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

**제11조 (관람자 준수사항)** 관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.
2.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의 촬영, 모사, 탁본을 할 수 없다.
3.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.
4. 전시실 내에서는 흡연, 잡담을 금한다.

**제12조 (제재)** 관장은 관람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**제13조 (관리)** 박물관의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. 다만, 학술단체,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출품의뢰가 있거나 소장품의 정리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.

**제14조 (변상)**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관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## 제 6 장 보 칙

**제15조 (위임규정)**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